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4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 제12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재 부분은 상위 법령의 단순 재 기재에 불과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준용한다.”라는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대상 법령이므로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 제12조(준용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재 부분은 삭제하고, “준용한다.” 부분은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24. ~ 9. 13.(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한다.

제12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한다.”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u>준용규정</u>)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한다.</u>	제12조(<u>다른 법령과의 관계</u>) ----- -----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u>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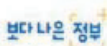
참고자료

□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당신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행 정 안 전 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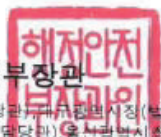
1. 평소 자치법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과태료는 그 부과 근거나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 상의 사항에 반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상의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 정비목록"을 통보하오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배부용). 1부.
2. 관련 정비목록.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 부산광역시(법무담당관), 대구광역시(법무담당관), 인천광역시(법무담당관), 대전광역시(법무담당관), 광주광역시(법무담당관), 울산광역시(법무통계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관청), 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 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 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 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 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 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 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염철승** 자치법규과장 **전경** 2018. 5. 16. **구본규**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과-1128 (2018. 5. 17.) 접수 법무담당관-3697 (2018. 5. 17.)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2-2100-4121 팩스번호 02-2100-4127 / yskhdd@moi.go.kr / 비공개(5)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

3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란?

-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음독(音讀: 음으로 읽는 것)하거나 훈독(訓讀: 뜻으로 읽는 것)한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한자의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는 순수한 일본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우리가 한자의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다.
- 이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꿔서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와 일치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다.
- ‘공부(公簿)’를 ‘공문서’로 바꾸거나 ‘부본(副本)’을 ‘복사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법령 내용에 따라서는 ‘공부’나 ‘부본’을 ‘공문서’나 ‘복사본’으로 쓰면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공부’나 ‘부본’을 그대로 쓴다.